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3층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1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백영기 [6574] / 보험정책급여팀장 고영옥 [6581] / 팀원 박소영 [6571] / E-mail 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02497호

시행일자 2026. 5. 22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일상생활동작검사 산정횟수 초과 청구」 자율점검 운영 협조 요청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-158 (2026. 5. 18.)
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「일상생활동작검사 산정횟수 초과 청구」 관련 자율점검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(점검기간) 2022. 7. ~ 2025. 6. (36개월)

- ① 대상기간 내, 청구 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 우선 점검
- ② 우선 점검 결과 착오 청구 확인 시, 대상기간 범위(36개월) 내 추가 점검

○ (점검사항) ‘일상생활동작검사’ 산정지침에 따른 적정 청구 여부 점검

- ① 요양(의료)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등 점검
- ② 제출 자료의 위·변조 여부, 실제 행한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확인

○ (방법 및 절차)

- ① 심평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 결과서 및 점검결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통보서 수령 30일 이내에 제출
- ②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함
 - 단,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 또는 위·변조 자료 등 허위사실 제출시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수 있음

붙임 : 1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-158 (2026. 5. 18.) 1부.
2. 일상생활동작검사 산정횟수 초과 청구 자율점검 협조요청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* 수신처 :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 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공중보건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